

2023학년도

학부모 연수 자료

2023. 3.

당 북 초 등 학 교

연수목차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3
3. 가정폭력 예방교육	5
4. 인권교육	7
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8
6. 학교폭력 예방교육	9
7.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11
8. 흡연예방 교육	15
9. 성폭력 예방	17
10. 디지털 성범죄 예방	23
11. 감염병 예방 교육	24
12. 양성평등교육	26
13.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28
14.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32
15.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36
16.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3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추진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2014.3.11.)
-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선행교육 근절 추진 계획(2014.7.7.)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4.9.12.)

2. 추진목적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및 인식 전환**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출제문항 최적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3. 용어 정의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 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4. 학교 책무성

< 특별법 제5조 제2,3,4항 '학교장의 책무' >

-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학생·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장 결재)

5.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6. 관련 영상 자료

영상자료 주소(유튜브)	영상자료 QR코드
https://youtu.be/_lohBYEqmaw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2.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 정서적 위협 감금 · 억제 · 기타 가혹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하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흉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명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파괴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2항)

- 교사직군

보육교직원, 유치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위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조시설 종사자, 건강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조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3.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아래 신고처로 신고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가. 1 STEP

-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2)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3)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4)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1)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2)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1)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 3) 피해아동 및 가정에 서비스 지원하기
- 4)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5)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112)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2. 가정폭력의 특성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상해, 학대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원가족 비난, 심각한 욕설, 인간관계 통제, 간섭과 의심	강제 추행,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경제활동 통제, 경제적인 방임

3.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1



가정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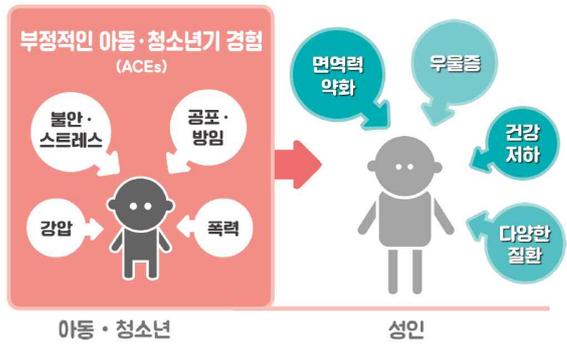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2



가정폭력의 특성

- 은폐성** ▶ 사소한 일, 사생활 등으로 치부됨
- 지속성 반복성** ▶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반복됨
- 중첩성** ▶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여러 형태의 폭력이 중첩됨
 - ex • 정서적 방임 + 경제적 폭력 • 배우자 폭력 + 아동학대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등

가정폭력이 끼치는 영향 1



가정폭력 사건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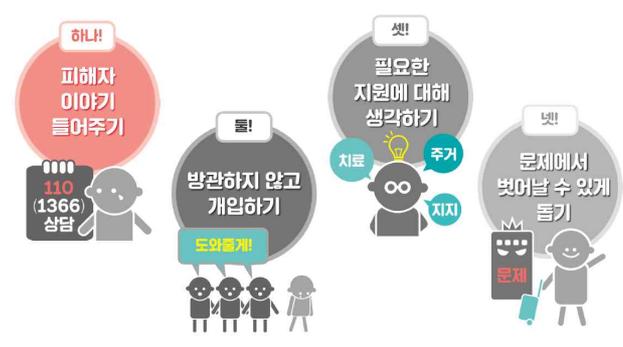
110(1366) 상담 및 지원 연계 긴급시 112!

▶ 형사처벌
▶ 보호처분

양육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경찰	검찰	피해자
응급조치 폭력행위의 제지 • 가해자와 분리 면담 •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 연계 긴급입시조치 • 폭력 재발 우려 및 긴급한 경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작장 100m 내 접근금지 •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입시조치 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신청) → 검사(청구) → 법원(결정) •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 주거·작장 100m 내 접근금지 •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 피해자가 직접 관할 법원에 신청 • 가해자를 주거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 • 보호명령 청구

가정폭력 예방 노력

- 상대방을 소유·통제하려 하지 않기
- 평등한 가정 분위기 만들기
- 평등한 관계 인식 노력하기
- 성 역할 고정관념 버리기
- 존중의 언어 사용하기
- 구성원 간 서로 소통하기

평등
통제가 아닌 존중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육자의 역할

가정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형성

- 자녀의 **보호자**로 올바른 양육
- 가정의 **조력자**로 구성원 의견 경청
- 가정 **구성원**으로 존중·배려

인권교육

1. 인권이란

인권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문자 그대로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양성을 지닐 수는 있지만, 인권 그 자체는 국가나 실정법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2. 의사소통, 아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으로 대화하세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나 - 전달법(I-Message) 의 3가지 요소

나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사실)
상대방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영향)
그러한 영향에 대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 (느낌)

(예시)

YOU-Message	I-Message
너는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지 않고 어디서 무얼 하다 오는 거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가 학교 끝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오지 않으면(사실) 나는 네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영향)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봐 걱정되고 불안해(느낌)

나 - 전달법(I-Message)을 긍정적 감정 표현에도 사용하세요.

- ☼ 네가 미술 시간에 어지럽혀 놓은 물감을 정리해 놓으니 (사실)
- ☼ 책상이 깨끗해져서 (영향)
- ☼ 내가 기분이 참 좋아. (느낌)

나-전달법(I-Message)
엄마의 잔소리를 사랑으로 바꿔주는 대화법입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11.5%의 학생은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고 2.4%는 자살 시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다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 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1.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경입니다.

- 가.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나.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2.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나.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다.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라.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마.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바.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사.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아.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자.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차.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카.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타.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3. 자녀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가.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 나.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다.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라.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 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 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 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 피해 징후

1. 늦잠을 자고, 몸이 아프다하며 학교가기를 꺼린다.
2.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진다.
3.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4.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에 대한 대화를 시도할 때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5. 폭력과 장난을 구별하지 못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한다.
6. 멍하게 있거나,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한다.
8. 쉽게 잠에 들지 못하거나 화장실에 자주 간다.
9. 학교나 학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
10. 용돈을 평소보다 많이 달라고 하거나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11. 스마트폰을 보는 자녀의 표정이 불편해 보인다.
12. 따돌림 당한 친구 사례를 얘기하며, 그런 경우 부모로서의 느낌을 묻는 질문을 한다.

3. 가정 내 학교폭력 예방 지도 방안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학교폭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2.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3.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얘기한다.4. SNS의 위험성, 악용의 결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지켜야할 예절 등을 교육한다.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한다.6.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7.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킨다.8.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 학교폭력 신고·상담 : 학교폭력신고센터(117), 학교폭력 SOS지원단(1588-9128), 도란도란(http://dorandoran.go.kr)9.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기적 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11.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이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인식시켜준다. |
|--|--|

4.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방안

1. 자녀와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준다.

“그런 일은 크면서 겪을 수 있어. 별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자녀의 상황을 흘려듣지 않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 해주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엄마가 도와줄게.” 등의 대화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2. 피·가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집단폭행 및 따돌림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학교폭력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가 겪은 상황에 대해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한다.

3.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 **117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Wee센터(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I 특수교육에서 말하는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이란?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분리교육을 실시하여 또래 친구들과 필요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통합교육의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사회성과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키는 기회를 얻게 됨
2.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움

II 특수교육 관련 용어 및 장애 이해

특수교육 대상자

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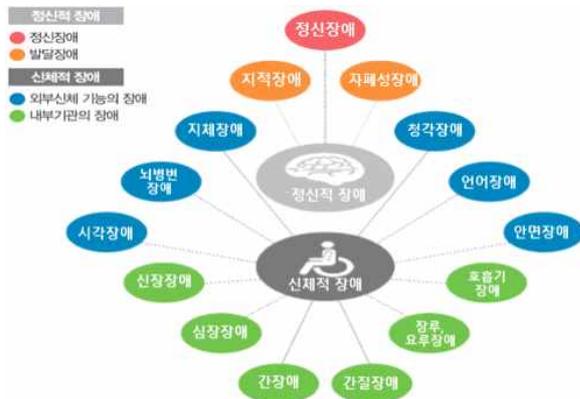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급에 설치된 학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해도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학생이어서도 장애등록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III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 위반시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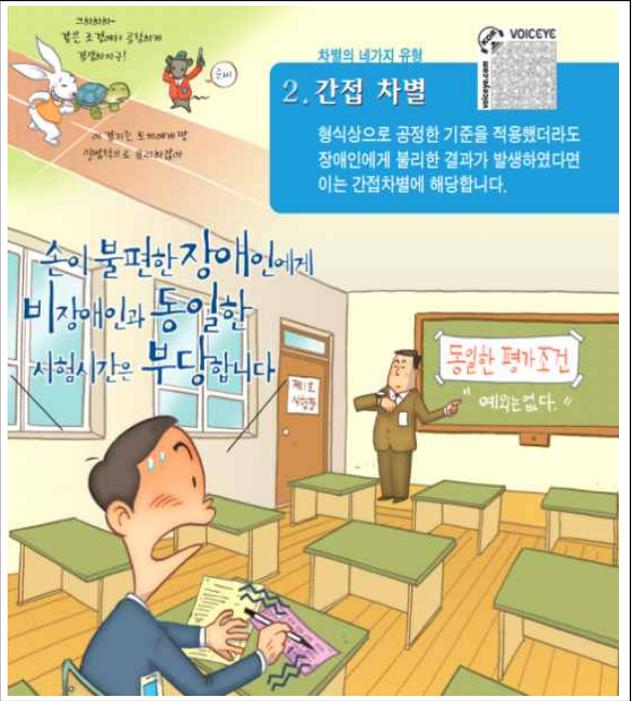
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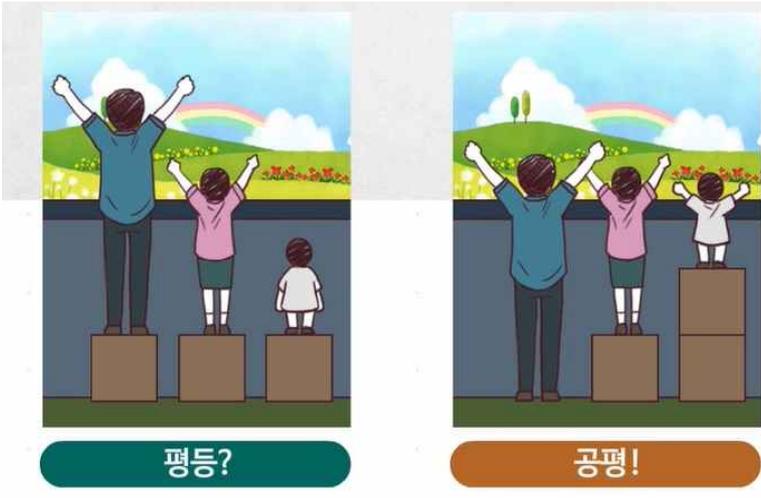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IV 평등과 공평 기



평등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평등한 발판을 제공한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반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에게 맞는 발판을 제공한다면 모든 사람이 멋진 밖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V 통합교육 Q & A

-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장애학생의 분리교육(특수학교나 전일제 특수학급)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표는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습니다. **장애학생들도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합니다.**

-
- ☒ 선생님,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일반 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수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 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또래 학생들이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가 장애학생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 ☒ 장애 진단을 받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호자에게 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보호자의 결정입니다.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진단을 거부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만큼 장애정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강요 할 수 없습니다.
- ☒ 아이가 장애학생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뭐라고 말해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와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이 할 수 있는 것과 해내기 어려워하는 것을 살펴본 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장애학생에게 말을 할 때에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장애학생을 도와 준 아이들에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세요.

**장애인은 dis/abled/person(불/가능한/사람)이 아니라
This/abled/person(여기/할 수 있는, 가능한/사람)입니다.**

흡연예방 교육

1. 담배의 성분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가지 이상의 해로운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 중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해로운 3가지 물질은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입니다. 또한 아세톤(매니큐어를 지우는 물질), 나프탈렌(방부제), 비소(개미 죽이는 약), 암모니아(화장실 청소제) 등의 독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담배의 가장 해로운 3가지 물질

- ① 니코틴 : 담배의 주요성분으로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고혈압, 심장병 등을 일으킵니다.
- ② 타르 : 담뱃진이라고 하는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란 우리 몸에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숨 쉬는 역할을 하는 폐에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암의 90%는 흡연이 원인**입니다.
- ③ 일산화탄소 : 우리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물질로, **피부를 검게 하며 빨리 늙게** 합니다. 담배가 **뇌의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2. 간접흡연이란?

- **간접흡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남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주위에서 들이마시는 상태로,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간접흡연의 피해
 - ▶ 평균 신장이 1cm 작아집니다.
 - ▶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이 5.6배 높아집니다.
 - ▶ 폐암 발생률이 2배 높아집니다.
 - ▶ 천식, 중이염, 폐렴 발현율이 6배 높습니다.
 - ▶ 뇌세포 파괴로 학습능력이 저하됩니다.
 - ▶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여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 ▶ 어린 나이의 흡연은 유전자 손상으로 각종 암에 걸립니다.
 - ▶ 흡연을 어린나이에 시작할수록 니코틴 중독이 더 심합니다.

3. 3차 흡연?

같은 공간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더라도 흡연한 사람의 옷이나 몸에 담배연기가 딱 달라붙어서 비흡연자에게 담배의 유해성분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집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흡연자 가정의 신생아 소비에서 '코티닌'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코티닌은 니코틴이 분해되어 나오는 성분으로 코티닌 농도가 높아 3차 흡연에 노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아무리 이를 닦고 샤워를 해도 담배의 성분을 없앨 수 없습니다.

- 흡연시 폐에 남아있던 담배연기는 흡연 후 14분까지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 50종이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8시간이 지난 후에도 몸에 잔류합니다.
-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판정받은 학생의 소변에서 코티닌 평균 수치가 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보다 70% 더 높게 나타납니다.

4. 흡연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1544-9030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성폭력 예방

1.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성폭력이란 성인 및 청소년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관계, 연령,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등의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3)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4)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5)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8)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9)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10)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그 미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성폭력 행위의 구분

접촉행위	비접촉행위
<p>* 만지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생식기 등 몸을 만짐 - 청소년의 질이나 항문에 손가락 또는 물건을 삽입하는 행위 - 구강성교 및 성교 등 	<p>* 만지지 않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성적인 말을 건넌 -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여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촬영함

성에 대한 표현이나 감정 또는 가치판단 등은 한 개인 스스로를 표현하고 규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성행동에 관한 선택 및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원치 않는 성행동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결정권을 성적 자결권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적 자결권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청소년 개인의 성적 자결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들을 정리하면, 강간, 강간치상 및 강간치사, 간음, 추행, 학대, 음란물 촬영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행위별로 유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학생 및 피해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화 하면 또래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지인에 의한 성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 구분에 의한 성폭력 유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1) 또래 성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경우의 성폭력을 의미하는데, 전혀 모르는 학생들끼리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 가까운 사이이거나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교제 중인 학생들 간의 데이트 성폭력도 포함되며,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를 들치거나, 화장실에서 몰래 훑쳐본다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는 경우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촬영, 상대방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 및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등의 행동까지가 모두 또래 성폭력의 유형에 해당되는 모습들이다.

2) 사이버 성폭력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글자 및 부호), 이미지(음향 및 영상물)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거나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를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미지를 전송하는 행위는 사이버 성희롱,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사이버 음란물 게시로 분류할 수 있다.

3)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성폭력 유형으로 이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것은 가해학생의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평범하게 생겼거나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상을 가진 가해학생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유형의 경우는 발생 장소가 가해학생의 자택, 자주 다니는 길, 학교 근방, 놀이터 등 일상적으로 자주 오고가는 장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지인에 의한 성폭력

이 유형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인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해학생 측이 부모님의 지인이라 자주 집에 드나들었다던가, 이웃이라거나 친구의 가족인 경우 피해학생은 이들을 익숙하게 생각해서 방심할 수 있다. 가해학생도 '아는 사이' 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학생들을 협박하거나 복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등 지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5) 친족에 의한 성폭력

현행법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는데,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친족에 의해 성추행 및 강간 등의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를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 약 30% 가량이 바로 친족에 의한 성폭력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는 특수성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 파악이 쉽지 않은 성폭력 유형이다. 또한 가해학생과 일상생활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으며, 가해학생은 의부나 친부, 남자형제 등인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가족들 내에서는 성폭력 사실을 숨길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재차 고통을 받게 되기도 한다.

2. 예방대책

가. 관내 각급 학교 정보제공

- 1) 각급 학교에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이트 및 앱 홍보
- 2) 학교(성)폭력예방교육 강화

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순찰지도강화

- 1)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합동 순찰 강화
 - 가) 경찰서, 지구대
 - 나)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성폭력예방담당 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 다) 시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굿네이버스, 성폭력상담소 등
 - 라) 기타 유관지역기관(단체)
- 2) 캠페인을 통한 예방강화
 - 가) 성범죄예방 전광판(현수막) 설치
 - 나) 히치하이킹에 대한 주의 안내
 - 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사이트 홍보(<http://www.sexoffender.go.kr/>)
 - 라)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 마) 학교(성)폭력예방에 대한 학부모 안내문 발송

3. 성폭력 피해예방 지도법

지속적으로 아동성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특성상 정확한 발생률의 파악은 힘들다. 아동은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해자의 위협이나 비밀유지약속, 피해특성상 잘못된 내적인 신념 등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밀스러운 것과 놀라운 것, 강화되어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함으로써, 나쁜 비밀은 꼭 어른들에게 말해서 알리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사례별 위기 상황 대처 방법

가. 만원 지하철에서 만지는 상황

- 1) 조심스럽게 행위를 중단하라고 상대방에게 의사 표현을 한다.
- 2) 가방 등의 소지품으로 몸을 가린다.

나. 학교 주변에서 성기 노출 시

- 1) 너무 심하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2) 최대한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때, 선불리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오히려 가해자가 먼저 피한다.
- 3) 경찰에 신고한다.

다. 강간을 시도하려는 치한을 만난 경우

- 1) 신체적인 조건이 열세인 피해자일 경우 물리적으로 상황을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물리적으로 심하게 저항할수록 치한은 더 더칠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치한에게 "요구에 응해 주겠다."는 언질을 주면서 상황을 피하는 돌파구를 찾는다.

라. 이상한 음란 전화를 받은 경우

- 1) 곧바로 끊고 또 다시 걸려 오면 전화선을 일시적으로 뽑는다.
- 2) 가해자는 전화를 받는 여성이 전화 내용으로 불쾌해하거나 무서워한다고 느꼈을 때 만족이나 쾌감을 경험하므로, 별다른 느낌이 없는 것처럼 끊는다.

5. 성폭력 피해아동 징후

가. 일반현황

성폭력 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한 아이의 말은 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이 두려워 이야기하지 못하거나 표현이 서툰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아동과 가까이 있는 친족일 경우 더욱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아두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피해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아동 모두에게 이러한 징후가 공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신체적 징후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성학대의 가능성이 있으나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신체적 증상: 성병, 임신
- 생식기 부분: 질에 분비된 정액, 처녀막 손상, 질의 상처, 외음부 상처(질 주변의 멍, 열창), 음경이나 음낭의 상처 등
- 항문 부분: 괄약근 손상, 멍이나 찰과상, 항문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의 열창, 홍진, 항문주변 정맥 충혈, 항문 반사근육 팽창
- 구강 부분: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 가슴 부분: 유두 및 유방의 상처(멍, 열창 등)

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 표현

아동이라도 성교육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성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성행위를 통해 알게 되는 구체적인 지식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에게서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볼 수도 있습니다.

- 어린 아동의 수준에 맞지 않는 조숙한 성지식을 흔히 무심코 내뱉음
- 성과 관련된 행동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함
- 자기보다 어리거나 순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행위, 또래와의 성행위
- 나이든 사람들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거나 몸짓을 보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 관계
- 지나친 자위행위

라.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어린 아동의 경우 성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협박 때문에 폭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시로 마주치는 친족인 경우 더욱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피해아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보이거나, 잠을 자주 깨기도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오줌을 싸고, 손가락을 빠는 등 나이보다 어린 퇴행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 감정조절을 못하고 과잉행동

친구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학교 또는 유치원 등에 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른이나 교사에게 보호를 청하며 필요이상으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유 없이 지나치게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며, 분노를 폭발하고, 문을 꼭꼭 잠그는 등의 행동, 특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산만함, 고행이나 막대리로 자신을 찌르고 쏘는 등의 자해행동 등 갑작스럽게 눈에 띄는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바. 장기적인 후유증상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은 일시적인 후유증을 겪기도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각종 후유증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 심리적 후유증: 공포, 불안, 강박행동, 분노와 우울증, 특정 인물 또는 장소와 물건을 무서워하거나 회피, 퇴행, 악몽과 불면, 남성에 대한 혐오감, 자기 학대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후유증: 질과 회음부의 손상, 성병, 두통이나 복통, 골반동통, 성기 이상, 피해가 장기화되면 사춘기로 가면서 임신과 낙태, 불임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 성적 후유증: 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성에 대한 공포, 혐오, 과도한 성적 호기심, 성불감증 등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사회적 후유증: 사회활동 기피, 알코올이나 마약의 탐닉 등 사회적응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6. 피해자 지원 방법

가.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사건이 발행했을 때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은 중요하므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 등에 포장하여 보관
- 48시간 이내에 피해상황 그대로(목욕을 하거나 씻지 않은 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검사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
- 피해자의 심리적 불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겪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불안 해소

나. 보호자의 행동 가이드라인

-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아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 피해아동이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피해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여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피해아동의 질문을 피하거나 사건을 잊도록 강요하지 말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말

- 네 잘못이 아니야
- 네가 이야기 해줘서 기뻐
- 우리 가족의 문제는 네 잘못이 아니야
- 널 보호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네가 안전하도록 보호해 줄게
- 그 사람이 너를 속인거야

7. 성폭력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

가.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나. 호루라기를 불어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다.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은 '싫어요.' 또는 '안 돼요.'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8.

전문상담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과 관련된 긴급상담 및 긴급보호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117	성폭력, 성매매, 학교, 가정폭력의 법률정보 및 상담 안내
해바라기센터(아동)	246-1375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시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현장상담센터	283-8297	성매매 피해자 상담, 의료·법률 지원 및 직업훈련·자활·자립 지원을 통하여 탈성매매 여성의 조속한 회복 및 사회복귀 유도
한국여성상담센터	02-953-1503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료출처: 여성가족부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유포 협박, 전시·판매하는 등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컫는다.

» 디지털성범죄 유형

- ① **불법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② **유포** :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③ **소비** :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다운 받거나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 후 게시(몰래 찍은 후 온라인유포)
-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 디지털 그루밍-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고 다양한 통제 및 조종기술을 사용하는 것 (주로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일어남)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단톡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모욕)
- 유포협박 (괴롭힘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유포협박)
- 재유포 및 제3자유포 (최초 유포 이후 2차유포)
- 사진 성적 합성 후 게시(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하여 성적으로 이용)

-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



전문 기관 목록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평일 10:00-17:00) 온라인게시판(www.women1366/stopds)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 817-7959 (평일 10:00-17:00)
- ▶ 한국성폭력상담소 02) 338-5801 (평일 10:00-17:00)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women1366'으로 검색)
- ▶ 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가능)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24시간 전화 상담) #1388 (24시간 문자·카카오톡 상담)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명	초기 증상	등교 중지 기간
홍역	귀 뒤에서부터 발진, 발열	발진 후 5일까지
수두	발열,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부어오른 귀밑이 가라앉을 때까지(약5일)
인플루엔자	38도 이상 고열, 관절통, 두통, 호흡기 증상	열이 내리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약 5~7일)
유행성 각결막염	안구 충혈, 안구통, 눈부심, 가려움증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 (1~2주)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 ※ 학생이 타인에게 전염가능한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 선생님께 전화 후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감염병 전파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손 씻기 지도해주세요.(1830 손 씻기)



4 코로나 19관련 마스크 착용 안내사항

구분	방역 당국 기준 및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학원 적용)
기본 원칙	학교 자율 방역체계(환기, 소독등)를 유지하면서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하되, 밀집 공간이나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및 고위험군, 확진자와 접촉자(확진자와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합창, 단체응원, 토론수업, 엘리베이터 탑승의 경우 ▶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입학식, 졸업식)
착용 권고 (자율착용)	▶ 모든 교실 수업, 강당수업, 실외수업 시(합창, 토론수업 제외) ▶ 사진 촬영 시(대화 자제)
기타 (급식실)	▶ 자율착용이나, 식사 시 대화 금지 , 손소독, 식사지도 유지

5 코로나 19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 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 (7일)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확진 정보 자가진단 앱에 입력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①학생:등교 중지 권고 ②교직원:자택 대기 권고
		음성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음성시 등교, 출근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학생	의심 증상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 하고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이용하여 자체 검사 -검사 결과 음성이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다음 날 등교	
	의심증상시 등교희망	"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결과 검사 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 가능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교육은 학교현장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중요한 교육입니다. 양성평등 교육은 양성 중 어느 특정한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신의 자유의지로 삶을 계획하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양성평등이란

- 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나.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차단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성차별이란

- 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 나. 성차별의 사례



3.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생각들

- 가.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좋다.
- 나. 남자는 여자보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많다.
- 다. 남자는 씩씩하고 용감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 라.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존적이다.
- 마.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은 따로 있다.
- 바.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가 우선 남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 사.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보다 철저한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 아. 남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 책임자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
- 자. 눈물을 보이는 남자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남자이다.
- 차. 여자의 행복은 전적으로 결혼을 잘 하는데 있다.

4.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생각들

- 가.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한다.
- 나.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
- 다.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한다.
- 라.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임금, 승진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5. 양성평등한 자녀교육이란

- 가.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합니다.
- 나.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다.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 라.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마.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바. 어렸을 때부터 딸과 아들에게 예술이나 체육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웁니다.
- 사.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아.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합니다.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줍니다.

6. 평등가족 5계명

- 가. 항상 좋은 일로 대화하도록 노력하고, 민주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가족 내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 나. 집안의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함께 분담하고 책임지며 휴식도 함께 취합니다.
 - 다. 가족 모두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 라. 가족 각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 마.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지구촌 가족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 ▶ 가족 내에서의 양성평등 실천은 평등한 사회로 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양성평등의식은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밑바탕이 되고 국민 화합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교원지위법)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칙』
- ※2019년 10월17일 시행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등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 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학생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 ⑥ 전학 ⑦ 퇴학처분(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는 적용 안 됨)

●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한 조치

- 형사고소·고발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외 침해자에 대하여는 학교의 장에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형사 처벌 법규에 위반하는 심각한 침해행위에 한하여 형사고소·고발로서 대응합니다. 이때, 피해교사가 원하면 관할청이라는 기관 차원에서 형사고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통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외 침해자의 행위를 심의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를 밝히고, 그 결과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행위가 이후로도 계속·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침해행위자와 피해교원이 희망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담당하기도 함
- 과태료 부과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르면,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바람직한 학부모 학교 참여 방법

※교육부 '학부모 교육자료' 내용 발췌

첫 번째는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녀의 학습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의 준비물을 챙겨주고 자녀의 학습과제를 같이 하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소통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활동입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체계나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고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학부모들이 지닌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방과후 학습 지도, 진로·진학 지도 등 학부모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부모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상담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학교의 문제를 논의 하고 결정하며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의 학교교육을 위한 관심과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성, 자존감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사와의 소통 강화

■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통해 상담의 질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은 학부모 등이 학교방문 신청 시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예약을 수락하도록 하며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시) 담임교사 등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문 예약

■ TIP : 담임선생님과의 상담(면담) 시 주의할 점 ■

- ☞ 사전에 정중하게 연락하여 상담을 위한 시간과 장소(교내)를 정합니다.
- ☞ 약속을 위하여 또는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를 합니다.
- ☞ 자녀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바로 담임선생님께 알려 드리도록 합니다.
- ☞ 면담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연락을 취하여 조정하도록 합니다.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학교운영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퇴직자는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에게 6만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해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인 아니므로 동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예, 맞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가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안됩니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예, 허용됩니다. >

학생들이 교사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식장에서 축하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학부모)과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 사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졸업식 당일에 담임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예, 가능합니다. >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졸업식 날 이후에는 학생과 담임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선생님이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예, 가능합니다. >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라면 종업식 날 이후 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각종 기념일에 학급 학생들끼리 선물이나 과자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

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회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예, 가능합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인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대책

1. 촌지 및 불법찬조금 정의

가. 촌지란

사전적으로는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는 의미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차별받지 않고 더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며 건네는 현금이나 물품으로 교육계의 이기적이고 비인격적인 문화임

나.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임

2. 촌지 및 불법찬조금 유형

가. 촌지 유형

- 1)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2)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나. 불법찬조금 유형

- 1)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2)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3)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4)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안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 내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심리로 촌지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일체의 불법찬조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1.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나. 개인 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 및 상대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개인 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 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3. 우리 아이 네티켓 키우기

-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 라. 신상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마.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게임·도박 중독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및 이동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 학생보호 앱 활용